2023년 4차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임시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04월 19일 화요일 16:00
■ 장　　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61번길
■ 참 석 자 : 이사 6명, 감사 1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대표이사	김정숙	이　사	강희탁
상임이사	이경애	이　사	이봉수
외부추천이사	김영화	외부추천이사	이상옥
감　사	권후자		

■ 안 건 : 1.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 건
■ 안 건 : 2. 법인 정관 변경 건
■ 안 건 : 3. 법인회계 부적절에 따른 오류사항 보완 건
■ 안 건 : 4. 위법한 이사회 구성·운영에 따른 의결 무효 문제로 인한 중요사안 재심의 건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이사 김정숙은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내　　용

■ 제1호의안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 건

대표이사 김정숙은 아래와 같이 2020. 3. 2. 정관의 변경(목적)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민법」 제52조에 의거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의거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기보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변경 등기를 하기로 승인 가결하다.

삭제할 목적 : 1. 노인 인권 보호 및 보호사업
1.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사업

■ 제2호의안 법인 정관 변경 건

대표이사 김정숙은 본 법인의 영업형편상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변경하기로 승인가결하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변경]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다음 연도 03월 31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변경]
①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직무) [변경]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외부추천이사) [추가]
법인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보,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구성한다. 외부추천이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외부이사를 선임한다.

제 28조 (기존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변경]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소집한다.

제34조 (회의록의 공시) [추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

■ 제3호의안 법인회계 부적절에 대한 오류사항 보완 건

대표이사 김정숙은 아래와 같이 본 법인의 법인회계 부적절에 대한 오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오류사항 보완에 대한 그 가부를 묻다.

1. 연도별 예산 편성시, 법인 기본재산(현금)은 세입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 해야하나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은 해당 재산(현금 106,282천원)을 2021년 및 2022년 법인회계의 세입에 편성하였음.
보완사항 : 법인 기본재산(현금)의 별도 관리

2.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자료의 세입합계액과 세출합계액의 불일치, 2020년 및 2021년 세입 이월금의 예산 및 직전년도 결산금액의 불일치 하였음.
보완사항 :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을 세입합계액과 세출합계액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2021년 세입 이월금의 예산 및 직전년도 결산금액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3.2019년 및 2020년 사무비를 예산액을 초과하였음.
보완사항: 2019년 및 2020년 사무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 변경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4.2020년 법인 재산세를 후원금통장 잔액을 법인운영 통장으로 이체하여 법인 부담 예산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음.
보완사항: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5.비지정 후원금 결산액이 2019년 1,640천원, 2020년 1,590천원, 2021년 480천원에 불과한데도 연평균 9,000천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사무비 결산액이 2019년 3,946,000, 2020년 1,255,000, 2021년 503,000에 불과한데도 2021년 및 2022년 예산액을 23,400,000으로 계상한 것에 대한 예산관리 부적절
보완사항 : 2021년 및 2022년 예산액을 과도하게 높게 측정한 것에 대하여 수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6. 2022년 예산수립 시 공공요금을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공과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잡지출 계정과목으로 계산하였음.
보완사항 : 2022년 예산 수립 시 공공요금을 잡지출로 계산한 오류를 수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7.2019년 법인회계 전출금 결산액이 2019. 2. 25에 진행되었으나, 결산액에 표시가 안되며, 2019.6.27.일자 지출결의서에 3,700천원 지출 기록과 전입 받은 시설의 수입결의서 2019.2.26.과 상이함
보완사항 : 2019.6.27.로 기재된 법인 지출결의서를 2019.2.26.로 수정하고 전출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결산액에 표시가 되도록 보완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대표이사 김정숙은 이와 같은 상기 오류사항을 보완한 2019~2022년 예, 결산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나누어주고 상세히 설명하고 가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진행하기로 승인가결하다.

■ 제4호의안 위법한 이사회 구성·운영에 따른 의결 무효 문제로 인한 중요사안 재심의 건

대표이사 김정숙은 아래와 같이 위법한 이사회 구성·운영에 따른 의결 무효 문제로 인한 중요사안을 적법한 이사회 구성으로 재심의 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그 가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해당 사항들에 대해 승인가결하다.

2018. 12. 24.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예산안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예산안 보고의 건
안건 3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안 보고의 건

2019. 02. 14.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2018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2018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3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2018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4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후원금) 전출 건
(법인 후원금 3,700천원을 기저귀 비용 지출을 위한 밝은언덕노인요양원으로 전출)

2019. 07. 15.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사외이사 연임 건
(사외이사 연창준 연임)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평가결과 보고의 건
안건 3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보고의 건
안건4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반찬나눔사업 진행 보고의 건

2019. 08. 16.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감사 연임 건
(조성록, 권후자 감사 연임)

2019. 11. 11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지도점검 결과 보고 건
안건 3.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정관 변경 건
(법인 목적사업 중 노인 인권 보호 및 교육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 삭제 및 이사 정수 10명 증원)

2019. 12. 24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예산 보고의 건
안건 2 : 2020년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예산 보고의 건
안건 3 : 2020년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 보고의 건
안건 4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정관변경 중간보고 건

2020. 01. 23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정관변경인가신청 건
(법인 목적사업 중 노인 인권 보호 및 교육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 삭제 및 이사 정수 10명 증원)

2020. 05. 20.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2019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3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4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후원금) 전출 건
(법인 후원금 3,700천원을 기저비용 지출 목적으로 밝은언덕노인요양원으로 전출)
안건 5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 추가 선임 건
(사영운, 이봉수, 장연호 선임 및 외부추천이사 이상옥 선임)

2020. 11. 25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 임면에 관한 건
(연창준 이사 해임 및 외부추천 이사 이희수 선임)

2020. 12. 24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2021년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예산 보고 건
안건 2 : 2021년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예산 보고 건
안건 3 : 2021년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 보고 건

2021. 03. 30.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2020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2020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3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4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후원금) 전출 건
(밝은언덕 후원금 1,300천원을 종사자 급여 지출 목적으로 인해 밝은언덕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전출)

2021. 04. 23.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어르신 병원 내진 및 출퇴근 차량 구매 건
(스타리아 자가용 투어러 디젤 11인승 차량 총 가격 33,890,000원 구매)

2021. 12. 23.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안건 3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2022. 03. 02.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외부추천이사 선임에 관한 건
(외부추천이사 김영화 선임)
안건 2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 연임에 관한 건
(김정숙 대표이사, 이경애 상임이사, 강희탁 이사, 서민숙 이사의 임기가 2018,.08.30부터 연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법한 법인 운영을 위하여 연임)
안건 3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감사 연임에 관한 건
(권후자 감사, 조성록 감사의 임기가 2021. 08. 30부터 연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법한 운영 위하여 연임)

2022. 03. 22.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2021년 결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 결산 보고의 건
안건 3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2021년 결산 보고의 건

2022. 05. 20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휴업 건
(코로나로 인한 휴업 진행 예정)

2022. 07. 01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매 건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1,000만원 및 요양원 운영비에서 지출 예정)

2022. 12. 22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예산 보고의 건
안건 2 :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 보고의 건
안건 3 :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예산 보고의 건
안건 4 : 시설장 직책보조비 인상 건
(시설장 직책보조비 1,500,000원 지급에서 2,000,000원으로 인상 지급 건)

2023. 03. 27 개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이사회
안건 1 : 2022년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안건 2 : 2022년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세입 / 세출 결산 보고 및 휴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병설기관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코로나 대규모 확진으로 인한 휴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휴업을 다시 진행)
안건 3 : 2022년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의 건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구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서명 날인하다.

2023년 04월 19일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154532-0003565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4-2
대표이사 김정숙

대 표 이 사 : 김정숙

상 임 이 사 : 이경애

이　　사 : 김영화

이　　사 : 강희탁

이　　사 : 이봉수

이　　사 : 이상옥

감　　사 : 권후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사유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맞춘 정관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사유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다음 연도 03월 31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맞춘 정관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의거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은 해임명령권자를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임원 해임의 주체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알맞게 변경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이를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분명하게 변경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별도의 방식없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은 감사의 이사회 소집방식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사유		제25조 (외부추천이사) 법인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구성한다. 외부추천이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외부이사를 선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외부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 조문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대표자 성명 김정숙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9번지		전화번호 043 - 873 - 0108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34조 (회의록의 공시)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 조문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05 월 03 일

신청인 김정숙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